KiRi 리포트 2019.1.7.
이슈 분석

데이터 소유권 관련 논의

임준 연구위원

요약

현재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법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사실상의 보유 여부에 의해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 데이터 집적자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법률상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우선 유형재산 관련 소유권이나 저작권의 개념을 데이터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새로운 소유권 개념의 도입이 필요한데,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임. 데이터 경제에 적합한 소유권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가운데 하나임

금융당국은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음
  - 종합방안의 3대 추진전략에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내실화 등이 포함됨[1)]
- 후속 조치로 5월에는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2)] 7월에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3)] 도입 방안을,[4)] 그리고 11월에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음[5)]

본고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이나, 금융당국의 종합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6)]

1) 금융위원회(2018. 3),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2) 금융위원회(2018. 5),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3)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라고도 하는데, 개인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비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신용관리·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함
4) 금융위원회(2018. 7),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5) 금융위원회(2018. 11),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신용조회업에서 금융분야 핵심 데이터 산업으로"
6) 금융당국의 종합방안에서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이슈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 재원 조달과 관련된 위험재무(Risk Financing) 전략임. 위험재무는 데이터 경제에 있어서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요 위험재무 수단 가운데 하나는 사이버보험임

■ 먼저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된 현행 법률체계부터 살펴보면,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데이터 소유권을 법률에 규정한 사례는 없음[7)]

- 소유권은 아니지만 데이터와 관련된 권리가 법률에 일부 규정되어 있는데, 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정보주체에게 부여된 권리임
  -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열람권,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권,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가 일부 규정되어 있음

■ 정보주체에게 부여된 일부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Residual Rights)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현재는 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에 의해 결정됨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데이터 집적자(Data Collector)가 사실상의 데이터 소유권(De Facto Data Ownership)을 가지게 됨
  - 즉, 현재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법에 의해 규정되기 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사실상의 보유에 의해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임[8)]

■ 그러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 법률상 데이터 소유권(De Jure Data Ownership)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9)]

- 기업 내부보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기업 외부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의 아웃소싱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전에 비해 데이터 집적자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이 감소하고 있음
-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기술의 융합 현상으로 인해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여러 사업자 간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음
  - 그 결과 제3자(Third Party)의 데이터 접근 가능성이 커지면서 데이터 집적자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음
- 데이터 집적자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이 감소할 경우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할 수 있음
  - 데이터 분쟁 관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법률상의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7) 데이터 소유권 관련 현행 법률 체계에 대한 논의는 다음 문헌에서 인용함: Nestor Duch-Brown, Bertin Martens, and Frank Mueller-Langer(2017), "The Economics of Ownership, Access, and Trade in Digital Data", JRC Digital Economy Working Paper 2017-01

8) 과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Gold Rush) 시대에도 광산 소유권을 보장하는 법적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는 무기와 같은 무력의 보유에 의해 소유권이 분배되었음(전게서 Nestor Duch-Brown et al.(2017))

9) Daniel Zimmer(2017), "Property Rights Regarding Data?", in Sebastian Lohsse, Reiner Schulze, and Dirk Staudenmayer(eds.), *Trading Data in the Digital Economy: Legal Concepts and Tools*, Hart Publishing

■ 역사적으로 볼 때 저작권(Copyright)이 등장한 배경도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장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함[10)]

- 인쇄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물에 대한 저자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관련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저작권이 도입되었음

■ 법률상의 데이터 소유권을 도입한다면 어떤 형태가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유체물(Physical Objects)에 대한 소유권 개념을 데이터에 적용해보는 것임[11)]

- 이 경우에는 유체물과 데이터가 가지는 재화의 특성 차이로 인해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 개념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유체물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경합재(Rivalrous Goods)의 성격을 가지는데 반해, 데이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경합재(Non-Rivalrous Goods)의 성격을 가짐
- 데이터에 대해 유체물의 경우에서처럼 완전한 배타적 소유권을 부여하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작권 개념을 데이터에 적용해보는 것임[12)]

-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Creative Act)인 데, 단순한 데이터의 집적을 창조적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존재함

■ 기존의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개념을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새로운 소유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는 초기 단계임

- 아직은 사실상의 데이터 소유권 체계를 대체할 만한 법률상의 데이터 소유권 체계를 찾지 못한 상황임

■ 데이터 경제에 적합한 소유권 제도를 고안해내는 것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가운데 하나임 KiRi

10) 전게서 Nestor Duch-Brown et al.(2017)
11) 전게서 Daniel Zimmer(2017)
12) 전게서 Daniel Zimmer(2017)